배리어프리 제작자 양성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한

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

서울노인복지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(이하 "양 기관" 이라 한다)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배리어프리 제작자 양성과 및 제작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교류·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으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배리어프리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자 양성 교육 운영,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.

1. 배리어프리 제작자 양성 교육 운영
2. 서울노인영화제 출품작의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
3. 시니어의 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공동협력
4. 양 기관 간 협력사업을 위한 인적·물적 인프라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3조(협력방법)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인적·물적 자원의 제공 및 교환, 교육, 자문,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·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.

제4조(협약이행)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,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업무상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권리양도의 금지) 양 기관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7조(협약변경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합의 하에 별도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효력발생) 본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측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0조(기 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.

2021년 5월 10일

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

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

서울노인복지센터

센터장 김경미(희유)

시청자미디어재단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

센터장 류위훈